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4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의자 : 김위상 · 김선교 · 박성훈
추경호 · 박충권 · 구자근
박성민 · 정동만 · 조지연
우재준 · 김소희 · 김승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에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마지막 학기를 남긴 사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규정은 모
호할 뿐만 아니라, 졸업 전 마지막 학기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시험
및 졸업 준비 등으로 바쁜 졸업예정자에게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
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학 중'이라는 불인정 요건은 유지하되, 졸업까지 2학기 이
하로 남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하여 졸업 학년부터는 구직촉
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년 취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제3항제1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학업, 군복무”를 “학업(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제외한다), 군복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 · ② (생 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 당시 <u>학업</u> , <u>군복무</u> , <u>심신장애</u> 및 <u>간병</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 <u>학업(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제외한다)</u> , <u>군복무</u> ----- ----- ----- ----- ----- 2.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